

- 양심의 씨앗을 뿌리면, 청렴의 꽃이 피어나요 -



남양주도시공사



수 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[펀그라운드 진접] 2025년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칙 수립 보고

2023년 펀그라운드진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회칙을 불임과 같이 수립하여 청소년들의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불임 2025년 펀그라운드 진접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칙 1부. 끝.

★대리 07/14 11:43 임혜정 펀그라운드진접센터장 07/14 16:34 정해원

협조자

시행 펀그라운드 진접-5477 (2025. 7. 14.) 접수 ()

우 1200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23 (펀그라운드진 접) / <https://funground.or.kr>

전화 031-560-1386 /전송 / hjhjhjlim@naver.com / 공개

[편그라운드진접] 청소년운영위원회 “다원” 회칙

제정 2023년 3월 4일

개정 2025년 6월 14일

제1조(목적) 이 회칙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편그라운드 진접 청소년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회칙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편그라운드 진접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편그라운드 진접 운영 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
2.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
3. 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
4.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
5. 회의를 통한 의견 확립 및 운영위원회 활동 홍보
6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~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학교별, 성별,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. (인턴십 과정 포함)

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
④ 위원회는 원활한 조직 구성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 운영·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5조(권리와 의무)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편그라운드 진접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촉) ① 위원은 지역사회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편그라운드 진접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의사를 밝히면 지속할 수 있다.

제7조(해촉)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

1.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
2. 센터 및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경우
3.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'특별한 사유'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천재지변
2.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
3. 본인 질병(전염성이 있는 감염병)과 사고(프로그램 당일 사고, 입원 등)
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 이내)의 상(喪) 및 결혼
5. 위원장과 담당 청소년지도사가 인정하는 개인 사유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펀그라운드 진접 운영 계획의 수립, 평가에 관해 참여하여 서명 날인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개최)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

펀그라운드 진접 센터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내에 펀그라운드 진접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견수렴 및 반영)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, 제안,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펀그라운드

진접 센터장은 그 처리 결과를 회신 및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(보상)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사회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

수여하거나, 대외적인 수상 자격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.

제12조(운영회칙의 변경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회칙안을 발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회칙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 변경된 운영회칙은 펀그라운드 진접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회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
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펀그라운드 진접 센터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2025년 펀그라운드 진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회칙으로 제정합니다.

2025. 6. 14.

센터장	정 해 원	
위원장	여 가 온	
부위원장	이 라 엘	
위원	김 규 립	
위원	성 선 아	
위원	송 채 아	
위원	송 현 이	
위원	안 서 정	
위원	양 다 빈	
위원	전 유 나	
위원	전 하 늘	
위원	정 여 은	
위원	황 윤 지	